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지침

본 지침은 단독, 호텔, 주거 시설 및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요가/필라테스/발레 스튜디오, 복싱/리복싱 체육관, 피트니스 부트캠프, 크로스핏(CrossFit)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기타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트니스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및 호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을 확인하십시오.

본 지침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지침의 발효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실제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운동 클래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일자로 재개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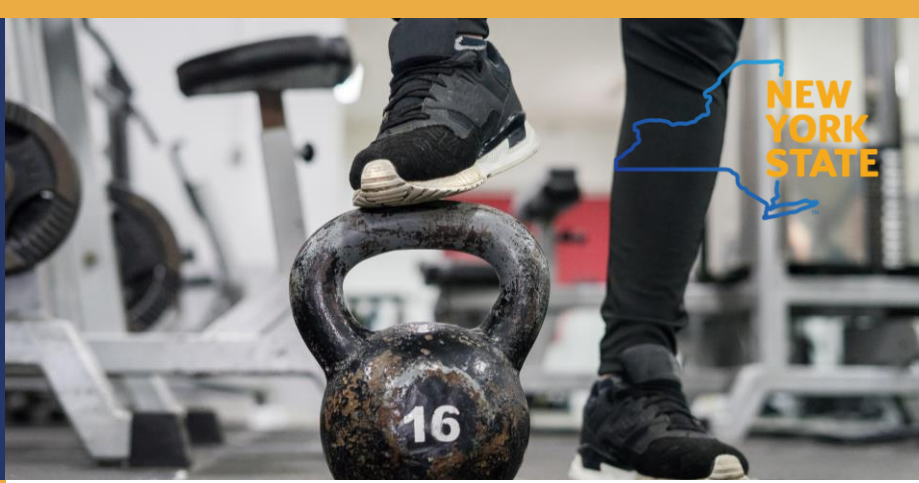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소유주/운영자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의 수용 인원을 최대 수용 인원의 33 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며 직원 및 고객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이러한 커버를 견딜 수 있는 경우 항상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고,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페이스 쉴드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or for Disease Control, CDC)는 "현재 마스크 대신 페이스 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아래 6페이지의 "선별 검사" 섹션의 설명에 따라 건강 검진을 완료하고 통과합니다. • 입장 시 등록(또는 원격으로)하고 접촉자 추적에 사용할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제공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데이터 기록은 최소 28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주정부/지역 보건부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핵심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짧은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개인 간의 거리가 6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활동에 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운동 스테이션(유산소 기구, 매트 등)의 사용을 변경, 재구성 및/또는 수를 제한하여 사람들이 적어도 모든 방향에서 서로 6피트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라커룸,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합니다. ✓ 스포팅 운동의 경우 가능한 최소 시간(시간 끌기 금지 등)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공동 샤워실 폐쇄. 개인 샤워실은 매번 사용 후 청소 및 소독하는 경우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공간(보관실, 장비 체크아웃 구역 등)을 한 번에 두 명 이상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명이 사용하는 경우 점유율을 최대 공간 수용량의 33%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 관찰자가 필요한 프리 웨이트 운동을 자제합니다. 만약 이러한 운동을 할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 있거나 웨이트 운동을 하지 않는 고객은 동일한 가구/단체의 구성원으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운동과 관련이 없는 장소(리셉션 데스크 등)에서 거리두기 준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지침에 따라 장벽(플라스틱 차단벽 등)을 설치합니다. ✓ 좁은 통로, 복도, 공간 또는 체육관 설비 중간 복도에 테이프나 표지판으로 화살표를 표시하여 공간 배치를 수정하고 양방향 유동 인구를 줄이십시오. ✓ 가능한 한 입구 및 출구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 비접촉식 체크인 및 결제 옵션을 마련하고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및 모바일 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공용 화장실에서 준수해야 하는 모범 사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피트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변기 및 싱크대 사이에 물리적 장벽 설치 • 공기 건조장치 대신 비접촉식 종이 타올 디스펜서 사용 ✓ 모든 모임(휴식, 식사, 근무 시프트 시작/종료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 공간 등)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근무 스케줄을 교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지침

본 지침은 단독, 호텔, 주거 시설 및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요가/필라테스/발레 스튜디오, 복싱/킥복싱 체육관, 피트니스 부트캠프, 크로스핏(CrossFit)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및 기타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트니스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및 호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을 확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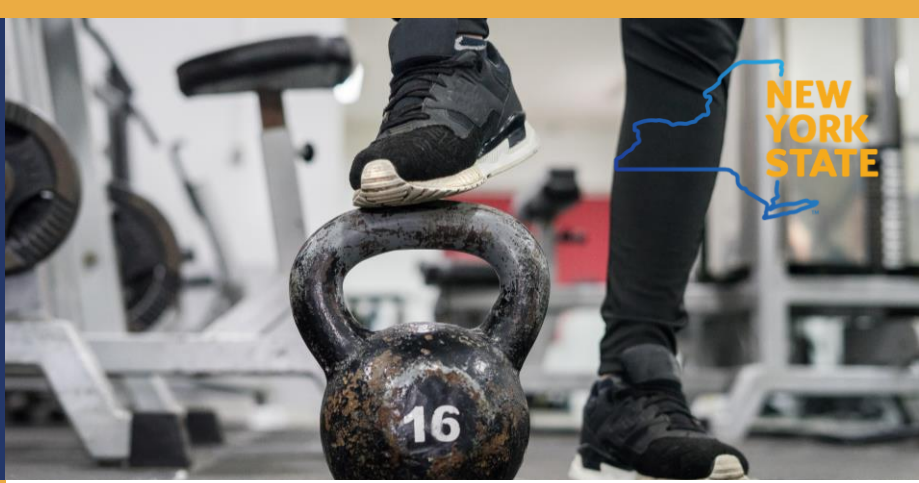
본 지침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지침의 발효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실제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운동 클래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일자로 재개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소유주/운영자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현장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 전 또는 개장 후 14일 내에 지역 보건부에 시설 점검을 예약합니다. ✓ 피트니스 수업 및 그룹 운동 활동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사전 등록, 원격 체크인 및/또는 수업 및 공간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상 개인 간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 내 수용 인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2) 일반 수업 참석 인원의 33 퍼센트로 제한합니다(휴식 스테이션, 사이클, 기타 장비로 비워두는 등). 3)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주정부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사람의 수를 제한합니다. ✓ 개인 트레이너/고객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개인 물품(수건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고위험군 활동(무술, 복싱 등)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침(Sports and Recreation Guidance)을 참조하십시오. ✓ 윌풀 욕조, 사우나, 한증막, 분수 등의 운영을 중단하나, 식수대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수영장, 소매점, 식품 서비스, 사무실, 및 보육에 대한 보건부(DOH) 지침을 따르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회원 중심 운영의 경우 수용 인원 제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 등록, 예약, 및/또는 원격 체크인 등의 사용을 실시 및 권장합니다. ✓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하여 야외 공간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 고객이 가능한 한 자신의 장비(요가 매트, 핸드 웨이트 등)를 가져 오도록 권장하십시오. ✓ 고객에게 개인 장비(매트 등)에 이음표를 붙이고 다른 고객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 사람들이 운동 시간을 지정하도록 운동 "시간표" 제도를 실시합니다. 정해진 그룹을 만듭니다(함께 운동하는 그룹 형성 등). ✓ DOH 지침에 따라 청소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운영 시간을 조정합니다.
공기 처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중앙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필터가 가능한 경우 최소한 현재 설치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13등급 또는 고효율 입자여과장치(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EPA) 등 업계 동일 수준 이상의 필터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공인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기록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MERV 13등급 이상의 중앙 HVAC 시스템 정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HEPA 등), 특히 건축 15년 이상 된 건물을 포함한 시설에서는 CDC 및 ASHARE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지침

본 지침은 단독, 호텔, 주거 시설 및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요가/필라테스/발레 스튜디오, 복싱/킥복싱 체육관, 피트니스 부트캠프, 크로스핏(CrossFit)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및 기타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트니스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및 호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지침을 준수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을 확인하십시오.

본 지침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지침의 발효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실내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운동 클래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일자로 재개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소유주/운영자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공기 처리 시스템 (계속)	<p>✓ 위에서 언급한 최소 정화 수준(MERV 13등급 이상)을 설치할 수 없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정화 시스템(MERV 13등급 등)을 설치하면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이전과 동일한 최소 수준의 냉난방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 및 인증할 공인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 보건부 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서류를 보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V 13등급 이상의 정화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설치한 시설은 CDC 및 ASHRAE 권고에 따라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프로토콜을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p>✓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없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 또는 제어하지 않는 시설은 CDC 및 ASHRAE 권고에 따라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프로토콜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p>	
보호 장비	<p>✓ 반드시 직원/고객이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경우에만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2세 이상이고 이러한 커버 착용이 의학적으론 가능할 때에만 적용됩니다.</p> <p>✓ 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항상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p>	

WEAR A MASK.

GET TESTED.

SAVE LIVES.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지침

본 지침은 단독, 호텔, 주거 시설 및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요가/필라테스/발레 스튜디오, 복싱/킥복싱 체육관, 피트니스 부트캠프, 크로스핏(CrossFit)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및 기타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트니스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및 호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지침을 준수를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을 확인하십시오.

본 지침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지침의 발효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실제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운동 클래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일자로 재개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소유주/운영자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보호 장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페이스 커버를 일시적으로 벗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과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페이스 커버는 물(수영장, 개인 샤워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페이스 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마스크 대신 페이스 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용 커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 ✓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에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 입과 코를 모두 덮으며 운동에 적합한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다나, 버프 및 게이터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커버가 아닙니다. ✓ CDC 지침에 따라 페이스 커버를 세척 및 교체하고 공유를 금지합니다. 직원과 고객에게 페이스 커버가 젖거나 더러워지면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하도록 권고하십시오. ✓ 운동 장비를 제외하고 물체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이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업계에 적합한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원이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요구합니다.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및 보건부(DOH)의 위생, 청소, 소독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날짜, 시간, 범위를 기록한 기록을 현장에 보관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접촉식 손 소독제 분사기를 설치합니다. ✓ PPE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주변에 배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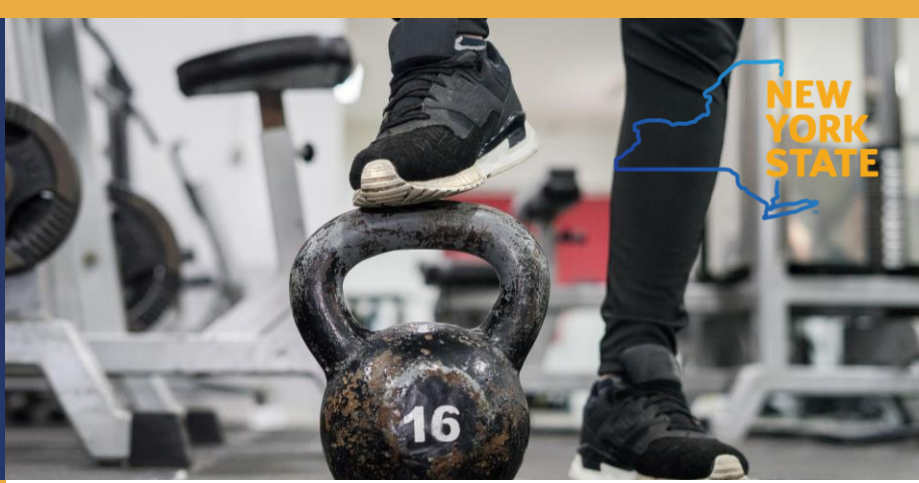
WEAR A MASK.

GET TESTED.

SAVE LIVES.



뉴욕 재개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지침

본 지침은 단독, 호텔, 주거 시설 및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요가/필라테스/발레 스튜디오, 복싱/킥복싱 체육관, 피트니스 부트캠프, 크로스핏(CrossFit)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및 기타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트니스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및 호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을 확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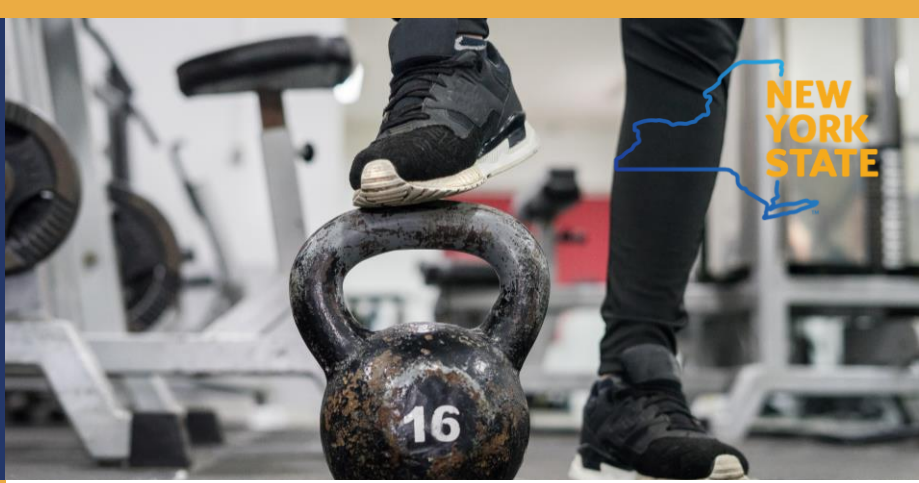
본 지침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지침의 발효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실제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운동 클래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일자로 재개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소유주/운영자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 따뜻한 물 및 일회용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가 가능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곳, 그리고 공용 공간(입구, 출구, 운동 스테이션 옆 등)에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곳곳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 ✓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합니다.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을 사용합니다. ✓ 매번 사용 후 직원이나 고객이 공유한 장비와 기계를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하는 표면 및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세척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합니다. • 매번 사용 후 장비를 닦을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고객 또한 장비 사용 전후 청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 장비(클리트 슈즈, 요가 매트 등)는 매번 사용 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사물함과 화장실은 적어도 2 시간마다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수건/세탁 서비스는 CDC 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자신의 수건을 가져 오도록 합니다.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에서 공표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구현할 것임을 확인하십시오. ✓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 및 정보 등을 포함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캠페인 개발을 고려해 보십시오.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지침

본 지침은 단독, 호텔, 주거 시설 및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요가/필라테스/발레 스튜디오, 복싱/킥복싱 체육관, 피트니스 부트캠프, 크로스핏(CrossFit)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및 기타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트니스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및 호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을 확인하십시오.

본 지침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지침의 발효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 행정책임자 또는 뉴욕시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실제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운동 클래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일자로 재개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소유주/운영자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선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고객,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하청업자 및 벤더에 대한 필수 건강 선별 검사(설문지, 체온 측정 등)를 시행하지만 배송 직원에게 이러한 검진을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 건강 검진에서는 최소 다음의 내용을 질문해야 합니다.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사 사례와의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 및/또는 (4) 지난 14일 동안 심각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주로 24시간 이상 체류 여부. ✓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주와 검역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DOH 여행 권고를 참조합니다. ✓ 선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절대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받아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모든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합니다. ✓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의 준수 등을 감독하는 책임자인 현장 안전 모니터를 임명합니다. ✓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을 제외하고 근무지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고객,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하청업자와 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각 개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술한 등록 데이터 기록을 28일 동안 보관하고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경우 사람들이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도착하기 전 원격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등). ✓ 선별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개인이 서로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 선별자는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이 진행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체온 검사는 또한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